

전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가단21895 판결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87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4.부터, 그중 32,87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파주시 D 전 2311㎡ 중 6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8.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132,8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3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7. 11. 100,000,000원, 2017. 8. 1. 3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8. 11. 15. 피고 C(피고 B의 친구 E의 동생)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파주시 D 전
2311㎡ 중 6분의 4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6분의 4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김제시 F외1 필지 G아파트 H호(2014.
12. 17.경 거래가액 69,198,000원) 및 I외 2필지 J아파트 K호(2015. 9. 7.경 거래가액

85,000,000원)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만 11억 500만 원에 이른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은 260,000,000원임),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7.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9. 7. 25. 채권최고액 43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M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대여금 4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2,87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4.부터, 그중 32,87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6분의 3 지분은 N, E, O이 2011. 10. 31.경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당시 소유자 P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각 6분의 1 지분씩 등기한 것이므로 피고 B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B이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다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어 수탁명의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피고 C도 위 명의신탁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을 제11호증 외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무자력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Q에게 2,439,000,000원을 편취당해 그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Q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40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1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2. 14. 이 법원에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인바, 피고 B이 Q에 대하여 2,439,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채권의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시키는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의 인적 관계(피고 C는 피고 B의 친구 E의 동생), 피고 C가 피고 B에게 2,136,650,000원을 입금하고 2018. 11. 19. 현재 874,35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3~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선의의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89,305,000원이고(시가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6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32,870,000원[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392,870,000원(589,305,000원 × 4/6) - 피담보채무액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